

瑞山市地方公務員旅費條例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查經過

가. 提出日字 : 1998. 8. 20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8. 8. 21

라. 上程日字 : 1998. 8. 26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總務課長 方景泰)

가. 提案理由

- 공무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 운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서산시지방 공무원여비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 시장에 대한 여비는 부시장 직급보다 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를 지급하며,

- 기타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자 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현행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공무원(국가) 국내여비 규정, 공무원(국가) 국외여비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되는 조례이며,
- 지난 '98. 2. 28일자로 공무원(국가)국내여비규정과 공무원(국가)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국가)여비 규정으로 개정시행 됨에 따라서 서산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도 상위 규정에 맞도록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 본 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 규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없었음.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6호
의결년월일	1998 8. 27. (제 32회)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제출자	서산시장
제출년월일	1998. 8. 26.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
----------	---

제출년월일 : 1998년 8월 20일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제안이유

- 공무원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운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현실정과 맞게 개정하려는데 있음.

□ 주요골자

- 가.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시출장여비를 일괄지급할수 있음(안 제2조).
- 나. 시장에 대한 여비는 부시장 직급보다 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를 지급함(안 제3조).
- 다. 기타 여비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안 제4조).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시장은 부시장 직급의 상위직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

②시장과 부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 17조제 1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 18조제 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 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 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 24조제 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 71조제 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 63조 제 2항”으로 본다.
5. 제 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 29조제 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 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 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별표 1] 제 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 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 3호의 해당 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또는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2조 준용)		
제3조(국내여비정액)	①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2” 여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 별표1의 제3호중 전문직 공무원규정을 지방전문직은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으로 본다. 다만, 공무형편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받는 숙박료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여행을 완료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신용카드업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 시에 받는 매출전표에 세부사용 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지급금액은 이미 지급 받은 숙박료의 1할을 넘지 못한다.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및 제16조 준용)		

현행	개정안
<p>②2인 이상의 공무원이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p>	<p>(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규정준용)</p>
<p>제4조(월액여비)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수 있다.</p>	<p>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여비) 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③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별표3” 이전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한다.</p>	<p>(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 준용)</p>

현 형	개 정 안
<p>1.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전부</p> <p>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상당액</p> <p>(신설)</p>	<p>(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규정준용)</p> <p>제3조(여비의 구분). ①시장은 부시장 직급의 상위직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를 적용한다.</p> <p>②시장과 부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p>
<p>제6조(현장지도여비)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 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②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의 여비를 지급한다.</p>	<p>(상위관련법 삭제)</p>
<p>제7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①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에도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p>	<p>(공무원여비규정 제 18조 준용)</p>

현행	개정안
<p>4시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4시간 미만인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와 같은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유지비를 지급 받은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p> <p>②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자이라 함은 서산시 관할구역 및 도서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p> <p>제8조(준용규정)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p>	<p>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준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현행	개정안
	<p>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p> <p>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p> <p>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6. 제2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p> <p>7. [별표1] 제1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당 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중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p>